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부남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0059
----------	-------

발의연월일 : 2026. 7. 21.

발 의 자 : 양부남 · 민병덕 · 박해철
차지호 · 채현일 · 조계원
박지혜 · 복기왕 · 윤준병
정준호 · 김한규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검사는 스톱킹범죄가 재발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면 법원에 잠정조치를 청구할 수 있으며, 법원은 스톱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결정으로 스톱킹행위자에게 잠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잠정조치의 유형으로는 서면 경고,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 금지,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가 규정되어 있음.

그런데 스톱킹범죄는 단순한 집착과 접근에 그치지 않고 신체적 폭력 또는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질 수 있음에도, 현행 잠정조치는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를 제외하면 대부분 일시적인 접근 제한이나 행위 제한에 그쳐 스톱킹행위자의 범죄 의지와 집착 성향을 근본적으

로 억제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더욱이 가장 강력한 조치인 유치의 경우에도 법원의 인용 문턱이 높아 실제 활용이 제한적이어서 사건 초기 단계에서의 실효적인 재범 방지 수단이 부족한 실정임. 반면, 현행법상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은 유죄판결 시에만 병과할 수 있어 조기 개입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이에 사건 초기 단계부터 상담과 치료적 개입을 통해 스토킹행위자의 집착 성향을 완화하고 재범 위험성을 낮출 수 있도록 잠정조치의 유형에 상담소예의 상담 위탁 및 의료기관예의 치료 위탁을 추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함(안 제9조, 제10조의2, 제11조 및 제21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각 호에 제3호의3 및 제3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제1항제3호의2”를 “제1항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8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4호”를 “제1항제3호의4 또는 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10항(중전의 제7항) 본문 중 “제4호”를 “제3호의3·제3호의4 및 제4호”로 한다.

3의3. 상담소에의 상담 위탁

3의4. 의료기관에의 치료 위탁

⑤ 제1항제3호의3에 따른 상담을 행한 상담소의 장은 그 결과보고서를 법원과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1항제3호의4에 따라 의료기관에 스톱킹행위자를 위탁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에게 스톱킹행위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려는 때에는 부과하려는 사항을 해당 의료기관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제1항제3호의3 및 제3호의4에 따른 상담소, 의료기관의 기준과 위탁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부담) ① 제9조제1항제3호의3 및 제3호의4에 따른 위탁 결정을 받은 스토킹행위자는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스토킹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예납(豫納)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스토킹행위자가 부담할 비용의 계산, 청구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제4항제3호 중 “제9조제6항”을 “제9조제9항”으로, “제9조제1항제4호”를 “제9조제1항제3호의4 또는 제4호”로 한다.

제2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제3호의3 및 제3호의4에 따른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법은 이 법 시행 전에 스토킹행위를 행한 사람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법원은 스톱킹범죄의 원활한 조사·심리 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스톱킹 행위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이하 “잠정조치”라 한다)를 할 수 있다.	제9조(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잠정 조치) ① ----- ----- ----- ----- ----- ----- -----..
1. ~ 3의2. (생략)	1. ~ 3의2. (현행과 같음)
<u><신설></u>	<u>3의3. 상담소에의 상담 위탁</u>
<u><신설></u>	<u>3의4. 의료기관에의 치료 위탁</u>
4. (생략)	4.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법원은 <u>제1항제3호의2</u> 또는 제4호의 조치에 관한 결정을 하기 전 잠정조치의 사유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 스톱킹 행위자, 피해자, 기타 참고인으로 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의견을 듣는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	③ ----- <u>제1항제3호의2부터 제3호의4까지</u> ----- ----- ----- ----- ----- ----- -----.

으로 정한다.

④ (생략)

<신설>

<신설>

<신설>

⑤ (생략)

⑥ 법원은 제1항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스토킹
행위자에게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것과 제12조에 따라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제3호의3에 따른 상담
을 행한 상담소의 장은 그 결
과보고서를 법원과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법원은 제1항제3호의4에 따
라 의료기관에 스토킹행위자를
위탁하는 경우 의료기관의 장
에게 스토킹행위자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우 민간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 위탁하려는 때에는
부과하려는 사항을 해당 의료
기관의 장에게 미리 고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⑦ 제1항제3호의3 및 제3호의4
에 따른 상담소, 의료기관의 기
준과 위탁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⑧ (현행 제5항과 같음)

⑨ -----제1항제3호의4 또는
제4호-----

항고할 수 있다는 것을 고지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에게 해당 잠정조치를 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1. 2. (생략)

⑦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3개월,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잠정조치기간은 1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3호의2에 따른 잠정조치에 대하여 두 차례에 한정하여 각 3개월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신설>

-----.

1. 2. (현행과 같음)

⑩ -----

-----제3호의3·제3호의4 및 제4호-----
-----.

-----.

제10조의2(비용의 부담) ① 제9조 제1항제3호의3 및 제3호의4에 따른 위탁 결정을 받은 스토킹 행위자는 위탁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한다. 다만, 스토킹행위자가 지급할 능력이 없는 경우 국가에서 부담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스토킹행위자에게 제1항 본문에 따른 비용의 예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 ③ (생략)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잠정
조치의 취소, 기간의 연장 또는
그 종류의 변경을 하였을 때에
는 검사와 피해자 및 스토킹행
위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구
분에 따라 통지 또는 고지하여
야 한다.
1.·2. (생략)
3. 제9조제6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제9조제1항제4호
에 따른 잠정조치를 한 사실
⑤ (생략)
<신설>

납(豫納)을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스토킹행위자
가 부담할 비용의 계산, 청구
및 지급 절차 등에 필요한 사
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잠정조치의 변경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

1.·2. (현행과 같음)
3. 제9조제9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 제9조제1항제3호
의4 또는 제4호-----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과태료) ①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1항제3호의3 및
제3호의4에 따른 잠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1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u>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u>법무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u>
--